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<http://www.kma.org>] / 전화(02)6350-6572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/ 보험정책급여팀장 고영옥 [6581]/ 팀원 이승아 [6572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5033호

시행일자 2026. 7. 28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(2026년 7월)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심사평가조정부-1557(2026. 7. 23.)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불임과 같이 알려온바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내용(총 8항목, 92사례) *2026. 7월 중 공개 예정

1.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(VAD) 요양급여 대상여부(19사례)
2. Burosumab 주사제(품명: 크리스비타주) 요양급여 대상여부(2사례)
3. Nusinersen sodium 주사제(품명: 스핀라자주) 및 Risdiplam 경구제(품명: 에브리스디건조시럽) 요양급여 대상여부(45사례)
4.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(품명: 졸젠스마주) 성과평가(15사례)
5. 소아에게 시행한 간이정신진단검사(나621나), GDS(나622가), CDR(나622나) 인정여부(3사례)
6. 아토피피부염에 생물학적 제제에서 야누스 인산화효소억제제로 변경 후 다른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 투여한 경우 약제 인정여부(2사례)
7. 유방절제술-양성-부분절제 편측 2부위 150% 인정여부(3사례)
8. 유방의 악성신생물 등 상병에 시행한 면역조직(세포)화학검사 인정여부(3사례)

○ 요양기관업무포털(<https://biz.hira.or.kr> →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심사기준 → 공개심의사례)에서 조회 가능함

○ 의협 홈페이지(<https://www.kma.org>) '공지·뉴스-건강보험 고시 안내' 에도 안내되었음

#불임 : 2026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 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